

강원도립대학교 보건실 운영 규정

(제정) 2016-09-05 규정 제418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본 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학처에서 주관하며,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전문 직원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3조(직무) 강원도립대학교 보건실(이하 “보건실”로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 (이하 “강원도립대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에 관한 사항
3. 일반 학생상해보험과 학생 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학보건사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보건실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 학생상담센터장이 되며, 기타 위원 3명은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생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 권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실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실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 보건실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년도 운영 계획 등에 반영하여 환류 되도록 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2016. 9.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